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20 .	• •
연 월	일	(제	회)

의 결 사 항

국 가 재 정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주기를 확대하되, 매년 중장기 조세 정책 점검·평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사항에 맞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 항목을 변경하려는 것임
- 나. 현행 총발행액 기준 국회 통제 방식에서는 국가채무 증가와 국회가 통제한 국채 발행규모에 차이가 존재하며, 적극적 만기분산을 통한 미래 차환위험 관리 및 조기상환·교환 등을 통한 탄력적 시장안정 조치 활용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표 하여야 하기 위해서는 재정정보 통합이 필수적이며, 이는 각 기관 의 재정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전제로 함
- 라. 기금·특별회계 근거 법률명 변경 및 기금청산·특별회계 폐지 등으로 국가재정법 상 기금·특별회계 근거법률명 수정 필요
- 마.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제8조(성 과관리 중심의 재정운용)와 제8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 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를 제6장(성과관리)으로 확대·신설하 고 재정성과관리 관련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

3. 주요내용

- 가. 국가재정법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 중 「중장기 조세정 책운용계획」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또는 중장기 조세정책 점검·평가보고서」로 변경
- 나. 국가재정법 제20조 예산총칙에 반영되는 국채 발행한도 국회의결 기준을 현행 총발행액에서 순발행액으로 개선
- 다. 재정정보 공표 등 재정에 관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대한 전자적 시스템 연계 요청권을 국가재정법 제112조의 2에 신설
- 라. 별표 1~3의 기금 및 특별회계 설치 근거법령 정비
- 마.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관리 중심의 재정운용)와 제8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를 제6장(성과관리)으로 확대·신설
- 1)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개념 및 원칙 (안 제93조 및 제94조)
- 2)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안 제95조)
- 3)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안 제96조)
- 4) 재정사업평가 중복 최소화(안 제98조)
- 5) 재정성과 관리제도 운용 위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안 제99조)
- 6)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추진체계(안 제100조)
- 7)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안 제102조)
- 8) 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안 제103조 내지 제105조)
- 9) 성과정보의 활용(안 제106조 및 제107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4호 중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조세정책운용계획 또는 중장기 조세정책 점검·평가보고서"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국채와"를 "국채의 순발행액과"로, "국채발행"을 "국채의 순발행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장의 제목 "보칙"을 "성과관리"로 한다.

제93조부터 제97조까지를 각각 제108조부터 제112조까지로 한다.

제97조의2를 제112조의2로 한다.

제98조부터 제102조까지를 각각 제113조부터 제117조까지로 하고, 제93 조부터 제10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는 재정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을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 및 결과를 관리하는 성과목표관리와 재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집 행과정,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성과 평가를 말한다.

제94조(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 ① 정부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통

- 해 재정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결과를 공개가능하도록 노력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95조(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관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의 기본방향
- 2.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3. 재정사업 성과관리와 관련한 연구 · 개발에 관한 사항
- 4.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5.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인력 또는 조직의 전문성·독립성 확보에 관하 사항
-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업무의 발전에 관한 사항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무회

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6조(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 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 ②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7조 제2항에 따른 지 침으로 정한다.
- ③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하위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 목표의 달성여부를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며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 ④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 성을 객관적으로 적시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성과지표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97조(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 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 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는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98조(재정사업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 및 개별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재정사업평가의 평가대상 사업간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9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에 대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0조(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추진체계)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 리주체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책임

지고 담당할 공무원(이하 "재정성과책임관"), 재정성과책임관을 보좌할 담당 공무원(이하 "재정성과운영관"), 개별 재정사업이나 사업군에 대한 성과목표관리를 담당할 공무원(이하 "성과목표담당관")을 지정하여 재정성과 목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재정성과책임관, 재정성과운영관, 성과목표담당관의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은 제97조 제2항에 따른 지침으로 정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 제101조(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및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 2.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 · 연구

- 3.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운영
- 4. 제98조제1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와 관련 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 5. 제100조제4항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평가단의 운영
- 6.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운
-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평가단의 운영
- 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구성하는 복권기금사 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단의 운영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출연할 수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수행하는 업무가 그 지정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에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교육프로 그램 개발 운영 등을 통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3조(성과정보의 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에 관한 성과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 성과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재정사업의 성과정보를 생산·관리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4조(성과정보의 공개)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결과 등 성과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과정보는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5조(국무회의 등 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6조(성과관리 결과 반영)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할 수 있다.

제107조(성과관리에 따른 보상 등)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따라 성과가 우수한 중앙관서 및 공무원에게 표창, 포상 등의 우대조치를 할수 있다.

제109조(종전의 제94조) 중 "제93조제2항"을 "제108조제2항"으로 한다. 제112조의2(종전의 제97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재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전자적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장의 제목 "벌칙"을 "보칙"으로 하고, .제108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117조 앞에 "제8장 벌칙"을 삽입한다.

별표 1 제3호, 제7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9호를 다음 과 같이 한다.

1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별표 2 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56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 농어촌공사"로 하며, 같은 표 제6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 3 제1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5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 제2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	③
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4
따른 중장기 <u>조세정책운용계</u>	조세정책운용계
<u> </u>	획 또는 중장기 조세정책 점
	검 · 평가보고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 ⑪ (생 략)	④ ~ ① (현행과 같음)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각	<u><삭 제></u>
중앙관서의 장과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기금	
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제외하며, 이하 "기금	
관리주체"라 한다)는 재정활동	
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u>한다.</u>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	
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	
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	

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 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 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 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할 때에 다음 연 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 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 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 리주체는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및 기금 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④ 삭 제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등에 관한 지 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각각 통 보하여야 한다.

⑥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u>그</u>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⑦ 삭 제

8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에 대하여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9) 제33소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는 사업내용 및 사업비등이 각각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

<삭 제>

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 립된 한국개발연구워 및 한국조 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및 조사 · 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 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 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제6항에 따른 주요 재 정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 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 • 연구 2.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 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 사・연구 3.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 른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 • 연구 4.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 용평가단의 운영 5.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 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 가단의 운영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조 사업평가단의 운영 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 2조제4항에 따라 구성하는 복권 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단 의 운영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그 업 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

3.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수행

하는 업무가 그 지정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

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정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예산총칙) ① 예산총칙에 저 는 세입세출예산 · 계속비 · 명 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 여야 한다.

1.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중앙 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 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포함하다)

2 · 3 (생 략)

② 정부는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한도액 을 초과하여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93조(생 략)

재정부장관, 중앙관서의 장, 제9 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 조제2항-----

세20조(예산총칙) ①	
1	
국채의 순발행액과	
	국
채의 순발행액	
2.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6장 성과관리 제108조 (현행 제93조와 같음) 제94조(장부의 기록과 비치) 기획 제109조 (장부의 기록과 비치) --

권 보관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은 행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 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다

제95조 ~ 제97조 (생 략)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① 제112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 ② (생 략) <신 설>

(3)

④ 제3항에 따른 재정정보 제공 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98조 ~ 제101조 (생 략)

<신 설>

제110조 ~ 제112조 (현행 제95조 부터 제97조까지와 같음)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재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 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대 하여 전자적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5)	ス	114	힝	 	 		-	-	-	_	-	-	-	-	-	-	-
				 	 -	_	_	_	_	_	_	_	_	_	_	_	_

제113조 ~ 제116조 (현행 제98조 부터 제101조까지와 같음)

제93조(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 리)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는 재 정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

		지표 등을 설정하고 이의 달성
		을 위한 집행과정 및 결과를 관
		리하는 성과목표관리와 재정사
		 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집행과
		정,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
		정하는 성과 평가를 말한다.
	<신 설>	제94조(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
	· · · · · · ·	칙) ① 정부는 재정사업의 성과
		관리를 통해 재정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
		<u>교물 6의 기급 6월 교기고기고</u> 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u>노력하여야 한다.</u>
		③ 정부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결과를 공개가능하도록 노력하
		여 재정운용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95조(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
		획 등의 수립) ① 기획재정부장
		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관하
		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The state of the s

1.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의 기본방향 2.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정사업 성과관리와 관련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5.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인 력 또는 조직의 전문성 •독립 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업 무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시행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 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 다. 제96조(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신 설>

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법 제97조 제2항에 따른 지침으로 정한다.

③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하위목표와 연계되어야 하 며,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성 과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도 록 구체적이며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④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적시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과지표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 야 한다.

제97조(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의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

<신 설>

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 66조제5항에 따라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에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등에 관한 지 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각각 통 보하여야 한다.

③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반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는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u>다.</u>
	④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		<u><신 설></u>	제100조(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추
	리주체는 「국가회계법」에서			진체계)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및 기금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의 성
	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			과관리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
	<u>다.</u>			<u>하여야 한다.</u>
<u><신 설></u>	제98조(재정사업평가) ① 기획재			② 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장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에			책임지고 담당할 공무원(이하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재정성과책임관"), 재정성과책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			임관을 보좌할 담당 공무원(이
	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 및 개			하 "재정성과운영관"), 개별 재
	별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재정사			정사업이나 사업군에 대한 성과
	업평가의 평가대상 사업간 중복			목표관리를 담당할 공무원(이하
	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			"성과목표담당관")을 지정하여
	<u>다.</u>			재정성과 목표관리 업무를 효율
<u><신 설></u>	제99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기획			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
	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			다.
	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			③ 제2항의 재정성과책임관, 재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			정성과운영관, 성과목표담당관
	<u> </u>			의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은 제97
	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의견 또			조 제2항에 따른 지침으로 정한
	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다.
	다. 이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성과목표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
	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
		l		

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성과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u><신 설></u>

제101조(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및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 연구
- 2.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고

- 3.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평 가단의 운영
- 4. 제98조제1항에 따른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 5. 제100조제4항에 따른 재정사업성과목표관리를 위한 평가단의운영
- 6.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 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 의 운영
-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평가단의 운영
- 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구성하는 복권기

 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단의

 운영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3	기획재	정부장	간은 저	1항에	따
	라 지정	된 전문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니	에 해	당하는	경
	우에는 :	그 지정	을 취소	<u> 산할 수</u>	<u> 있</u>
	다. 다만	·, 제1호	.에 해	당하면	ユ
	지정을 :	취소하여	여야 현	<u>다.</u>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수행하는 업무가 그 지정의 목적을 벗어 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삭 제></u>

<u>제117조</u> (현행 제102조와 같음) <u>제102조(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u> <u>량강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교</u> 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통 <u><신 설></u>

<신 설>

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3조(성과정보의 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에 관한 성과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 성과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 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재 정사업의 성과정보를 생산·관 리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4조(성과정보의 공개) 기획재 정부장관은 평가결과 등 성과정 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과 정보는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 니할 수 있다.

<u>제7장 벌칙</u>

<u>제102조</u> (생 략) <신 설>

<u><신 설></u>	제105조(국무회의 등 보고) 기획
	재정부장관은 매년 재정사업 성
	과목표관리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
	<u>다.</u>
<u><신 설></u>	제106조(성과관리 결과 반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
	과관리의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
	<u>영할 수 있다.</u>
	②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
	<u>과관리의 결과를 조직·예산·</u>
	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
	<u>할 수 있다.</u>
<u><신 설></u>	제107조(성과관리에 따른 보상
	등)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에 따라 성과가 우수한 중앙관
	서 및 공무원에게 표창, 포상 등
	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u><신 설></u>	제7장 보칙
<u>제93조</u> ~ <u>제97조</u> (생 략)	<u>제108조</u> ~ <u>제112조</u> (현행 제93조
	부터 제97조까지와 같음)
<u><신 설></u>	제8장 벌칙
<u>제102조</u> (생 략)	<u>제117조</u> (현행 제102조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							
연	락	처	(044) 215 - 5726				